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6
----------	-----

2022. 3. 22.
자치행정위원회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기존 개정으로 인한 삭제된 조항 및 장 등을 새로운 체제로 정비 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정약용 선생의 인문사상을 널리 알리며, 문화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기존 재정으로 인해 삭제된 장,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 및 문구 등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 (안 제1조~제15조, 제17조)
- 정약용문화제의 홍보 등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16조)
 - 안내 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 등 제작·배부
 - 정약용 선생 이미지 홍보 위한 기념품 판매소 위탁 설치·운영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정약용 선생의 애민사상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정약용문화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먼저, 구조 체계는 5장과 17조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부터 제4장 위탁 및 경비의 지원까지는 현행 조례의 전개배열 순서와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켰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비탄력적인 요소인 당연직 위원인 행정기구 직위의 명칭(행정기획실장, 문화교육국장)을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제5장에 제16조에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문화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물품의 배포와 기념품 판매소를 위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